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3월 22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년 3월 11일

나. 제안자: 김현희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2년 3월 15일

라. 상정일자: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2.3.22.)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김현희 의원)

가. 제안이유

기존 조례 제1325호의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기존 조례의 부칙 제2조 유효기간(2022.12.31.까지)의 삭제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2. 3. 11. ~ 3. 15.)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허은옥)

가. 개정취지

- 기존 조례 제1325호의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을 둔 부칙 제2조를 삭제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관내 민간 건축물에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건축물은 의무

인증시설)하기 위해 2020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 2020년 6월 제272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회의결과 한시적으로 조례를 운용하는 것으로 부칙조항에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수정가결됨

- 조례의 제정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게 시설 및 설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음 (※홍보물 별첨참조)
- 본 개정안은 부칙 제2조 유효기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존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내용에 근거하여 조례를 폐지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조례를 유지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홍보물 1부.
2) 관계법령 1부.

참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홍보물

0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담으로 운영하는 제도

02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03 BF인증 대상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공동주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
 ※ 제10조의2 제3항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별표 2의2)을 말함
 • '15.07.29부터 국가 및 지자체 공공시설 신축시 의무

04 BF인증 신청자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
 (개별시설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가능)

05 BF인증 인증등급

- 최우수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이상
 - 우수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이상 90미만
 - 일반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이상 80미만

06 BF인증 유효기간

- 본인증 : 5년
 - 예비인증 :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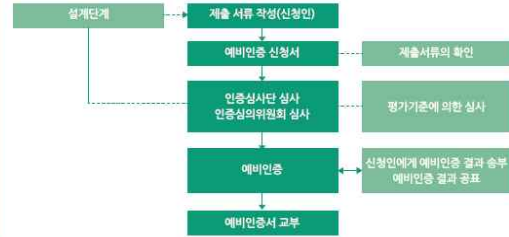


07 BF인증종류 및 절차

- 예비인증 : 개별시설의 사업계획 또는 건축물 설계단계
 - 본인증 :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1. 예비인증 절차

인증신청시기: 개별시설의 사업계획 또는 건축물 설계단계



2. 본인증 절차

인증신청시기: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08 BF인증 수수료

구분	구분	300㎡미만	300㎡이상~1,000㎡미만	1,000㎡이상~3,000㎡미만	3,000㎡이상~10,000㎡미만	10,000㎡이상
		(제1구간)	(제2구간)	(제3구간)	(제4구간)	(제5구간)
기본	기본 수수료	0.52,060,000	0.8	1.0	1.2	1.5
	적용 드물	0.52,060,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수수료	0.52,060,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예비인증	적용 비율	0.5	0.8	1.0	1.2	1.5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

* 단,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코시 시범사업부터 1년만 적용하며 전담까지 1.25배를 적용(본인증: 5,027,500원, 예비인증: 2,575,000원) 부가세 별도

09 BF인증 기관 및 연락처

연번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지원 유효기간	비고
1	한국토지주택공사	빈창훈	경상남도 진주시 송하로19 (송유공동)	1600-1004	19. 9. 28 ~ 22. 9. 27	기존
2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박인수	서울특별시중구 세종대로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12층	02-6973-9039	19. 9. 28 ~ 22. 9. 27	기존
3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여의도동)	02-3433-0600	19. 9. 28 ~ 22. 9. 27	기존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6번길 59(구미로)	1588-1519	19. 9. 28 ~ 22. 9. 27	기존
5	사단법인 한국전통예너지기술원	김일환	서울특별시 서오구 반포대로 30길 81 동진타워 7층, 8층	02-525-1025	19. 9. 28 ~ 22. 9. 27	기존
6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경희	서울특별시송파구 방위대로9길 26 에이치비즈니스파크2동 907-912호	023558-8123	20. 3. 28 ~ 23. 3. 27	기존 (공원유기)
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학규	대구광역시 중구 이호대로 291 (신서동)	1644-2828	20. 3. 28 ~ 23. 3. 27	기존 (공원유기)
8	사단법인 한국교육복지환경연구원	맹은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자사로36길 5 (가양동)	02-456-9442	20. 3. 28 ~ 23. 3. 27	기존 (공원유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조화로운사회 삶이바라다 강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 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